

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144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거창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층 기획전시실을 나무상상놀이터로 변경·운영 계획에 따라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기준과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변경함(안 제4조)

- 1) 폐지 : 전시시설 중 기획전시실
- 2) 신설 : 체험시설 중 나무상상놀이터

나. 나무상상놀이터 이용기준 및 이용료 신설(안 별표 2)

- 1) 1일 3번, 회당 90분 운영 : 회당 6,000원
- 2) 이용시간 : 10:00~11:30, 13:30~15:00, 15:30~17:00

다. 차별규정, 용어 정비(안 제12조제1항제6호, 별지 서식)

- 1) 삭제 :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
- 2) 용어 정비 : 기획전시실⇒나무상상놀이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0. 14.~11. 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”을 “상설전시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상관”을 “영상관, 나무상상놀이터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“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”를 “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,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설)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시시설: <u>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</u> 2. 체험시설: 초급·중급·고급 체험장, 유아체험실, <u>영상관</u> 3. 편익시설: 중정(쉼터), 카페테리아, 화장실 등 4. 그 밖의 시설: 운영사무실, 야외놀이 시설 등	제4조(시설)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시시설: <u>상설전시실</u> 2. 체험시설: 초급·중급·고급 체험장, 유아체험실, <u>영상관, 나무상상놀이터</u> 3. 편익시설: 중정(쉼터), 카페테리아, 화장실 등 4. 그 밖의 시설: 운영사무실, 야외놀이 시설 등
제8조(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) ① <u>제4조제1호에 따른 기획전시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</u>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(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 략)	제8조(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) ① <u>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</u>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(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행위 및 이용 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1.~5. (생 략) 6. <u>반려동물을 동반(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</u> 7.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(생 략)	제12조(행위 및 이용 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6.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<삭 제></u>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원)

시 설 명	이용기준	이 용 료	비 고
체험시설	4시간	50,000원	
	1일	100,000원	
기획전시실	1일	100,000원	<삭 제>
나무상상놀이터	10:00~11:30 13:30~15:00 15:30~17:00	회당 6,000원	1일 3번 회당 90분

1. 체험시설은 이용시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이용료 100,000원의 범위
에서 시간당 10,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
2. 체험시설의 이용료 감경기준
 - 가. 5일 이상 이용: 20퍼센트 감경
 - 나. 10일 이상 이용: 30퍼센트 감경
 - 다. 20일 이상 이용: 50퍼센트 감경
3. 나무상상놀이터의 이용료 1000원 감경대상
 - 가. 군에 주소를 둔 군민
 - 나. 20인 이상 단체
4. 체험시설은 목재관련 교육, 체험 및 문화행사, 세미나, 레크리에이션 등의
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, 이용시간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이용을 제한함

[별지 서식]

시설 이용 신청서

신청인 (개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 (남/여)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인 (법인)	법인 또는 단체명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(남/여) (서명 또는 인)	대표 전화번호	
	소재지		
신청내용	※ []에는 이용하려는 시설에 √표를 합니다.		
	목공체험실(초급)	목공체험실(중·고급)	카확전사살 나무상상놀이터
	이용인원		
	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		

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거창군수
(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) 귀하

210밀리미터×297밀리미터[일반용지 60그램/제곱미터(재활용품)]